

가계대출 상품설명서

-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대출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ㆍ 가계대출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유사한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

- **가계대출**은 의료비, 학자금, 생계비 등의 목적으로 받는 대출상품을 총칭하며, 대표적으로 **신용대출** 상품이 있습니다.
- 신용대출은 고객님의 소득, 보유 대출 및 연체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출한도와 금리가 산정되는 대출상품입니다. 담보대출과 비교하여 별도의 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대출 절차가 간편하다는 특징이 있으나, 담보대출보다 금리 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아 동일한 금액을 신용대출로 이용하는 경우 이자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(사잇돌대출, 비상금대출 등 일부 신용대출 상품은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운용하며 대출금리에 보증기관의 보증료가 포함됩니다.)

이 대출상품을 사용하는 고객이 자주 묻는 질문. 반드시 확인하세요!

- <u>대출상품 이용 시 대출계약의 체결만으로도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</u> 신용평점이 하락하면 대출 기한연장 시 금리 인상, 신용카드 신규 가입 거절 등 당행 및 다른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→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[8. 대출계약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]을 확인하세요.
- 대출금리는 대출 신청 시 선택한 변동주기에 따라 <u>대출기간 중에도 변동될 수 있으며</u>, 특히 <u>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경우에는 이자</u> <u>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</u>. 또한, 한도늘리기(증액), 기한연장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 또는 신용평가결과 등에 따라 대출금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→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[4. 대출금리 산정방식 및 결정요인], [9. 기타 유의사항], "대출거래약정서 제 1 조" 를 확인하세요.
- 대출 만기 전 자금이 생길 때마다 대출금을 갚고 싶은 경우, <u>모바일앱에서 휴일에 관계없이 원하는 금액만큼 중도상환이</u> <u>가능</u>합니다. <u>중도상환 완료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유의해주세요.</u> 카카오뱅크 신용대출은 중도상환시 중도상환해약금이 없습니다.
- →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[2. 수수료 등 비용부담]을 확인하세요.
-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, 만기일이 되기 전에 모바일앱을 통해 연장 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. 기한연장은 분할상환방식 대출에는 해당되지 않으며,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(감액)해야 하거나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.
- →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[7. 계약기간 및 연장사항]을 확인하세요.

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

- <u>대출금을 연체한 경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, 연체정보 등록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u> (예 : 1.2 억원 1 개월 이상 연체 시 연체금리(예시 : 8%)가 적용되어 월 연체이자 80 만원(1.2 억원 X 8% X 1/12) 발생)
- →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[6.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]을 확인하세요.

민원·상담·분쟁조정 연락처

- 민원·상담은 고객센터(1599-3333),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kakaobank.com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분쟁조정은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www.fcsc.kr)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
1. 상품 개요 및 특성

상품명 :	대출한도 : 원
적용(예상)금리 : 연 %	대출기간 : 취급 후 개월
금리적용방식 : □ 변동 □ 고정	휴일 대출상환 가능 여부 : □ 대상 □ 비대상
중도상환해약금 부과 여부 : □ 대상 ☑ 비대상	

※ 체크박스가 있는 구분 항목에 대해서는 가입 상품에 해당되는 경우, ☑로 표시됩니다.

✓ 대출계약 체결 시 고객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[대출금액과 이자, 수수료 등]을 합산한 총액이며, 정확한 금액은 대출심사 후에 확정됩니다.

2. 수수료 등 비용부담

- □ 중도상환해약금: 중도상환대출금액 x ()% x (대출잔여일수 ÷ 대출기간)
-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()개월(기한연장 포함)까지 적용합니다.
- ※ 중도상환해약금이란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.

), 금액(

- 다만, 기존 대출 계약을 해지하고 동일 은행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(기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전 등을 상환받는 새로운 계약)을 체결한 경우, 양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3 년이 경과한 후 해지할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됩니다.
- (예시) 중도상환해약금률 1%, 대출금액 1 억원을 대출기간 3 년(1,095 일/윤년포함 1,096 일)으로 약정 후, 대출기간 종료일까지 남은 일자가 180 일인 경우 상환시 중도상환해약금은?

1 억원 × 1% × 180 / 1,095 (윤년포함 1,096) = 164,383 원 (윤년포함 164,233 원)

□ 인지세 : () 원

□ 기타 비용: 항목(

※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, 고객과 은행이 각 50%씩 부담합니다.

		대출금액	5 천만원 이하	5 천만원 초과 1 억원 이하	1 억원 초과 10 억원 이하	10 억원 초과
		인지세액	비과세	7 만원	15 만원	35 만원
		고객부담	-	3 만 5 천원	7 만 5 천원	17 만 5 천원
은행부담		-	3 만 5 천원	7 만 5 천원	17 만 5 천원	
□ 기타수수료 : 항목(), 급), 금액()원, 수수료율	()%		

)원

-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4 조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-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은행이 부담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등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 46 조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


3. 금융소비자의 권리

가. 대출계약 철회권

-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, 계약서류를 받은 날,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 일(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) 내에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(다만,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.)
- 대출계약 철회를 위해서는 **모바일앱**으로 **은행에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표시**를 해야 하며, 이미 수령한 <u>대출금</u>과 이에 대한 <u>이자,</u> 대 출과 관련하여 **은행이 제 3 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등을 반환**하여야 합니다.
-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경우에도 철회권 행사 가능 기간 이내라면 대출 잔액에 대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하며, 이미 납입한 중도상 환수수료는 반환됩니다.
-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며, 5 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.
-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 개월 내에 2 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, 신규대출·만기연장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대출계약 철회권과 전액 중도상환의 차이점

구분	대출계약 철회권	전액 중도상환			
중도상환해약금	-	대출 잔존기한에 대해 발생			
반환 부대비용	은행이 제 3 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 관련 비용 등	-			
대출기록	삭제	미삭제			

나. 금리인하요구권

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상품 여부 : □ 대상 □ 비대상

-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**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**되는 경우(소득 상승, 개인신용평점 상승, 부채 감소 등) 은행에 자신이 적용 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(은행법 제 30 조의 2)를 말합니다.
- 금리인하요구권은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,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(협약대출·정책자금대출·집단대출 등)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,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은행은 **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**(고객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)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.

다. 위법계약해지권

- 금융회사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(법 제 17 조제 3 항 위반)
-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(법 제 18 조제 2 항 위반)
-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(법 제 19 조제 1 항·제 3 항 위반)
-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(법 제 20 조제 1 항 위반)
-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(법 제 21 조 위반)
-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**안 날로부터 1 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 이내**에 계약해지 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.



라. 자료열람요구권

-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
- 은행은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 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.
- 은행은 법령, 제 3 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**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 할 수 있습니다.**

마. 개인신용평가대응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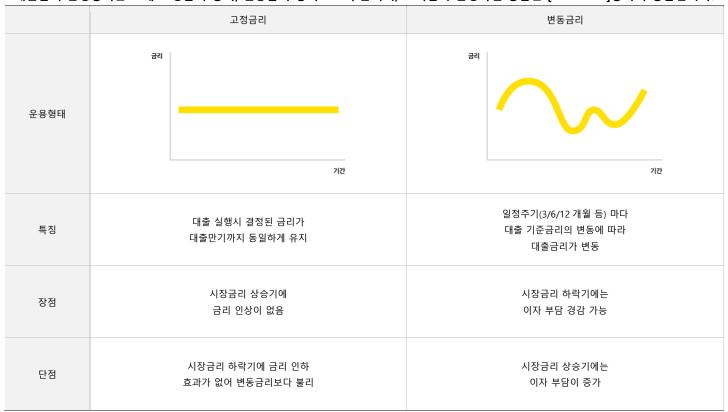
-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란 개인인 금융소비자가 **자동화평가**^{주)}에 따른 개인신용평가 <u>결과 및 주요기준 등의 설명</u>과 **자동화평가 결과의**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출 또는 기초정보의 <u>정정,삭제,재산출을 요구</u>할 수 있는 권리(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6 조의 2)를 말합니다.
 - 주) 은행 임직원이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금융소비자를 평가 하는 행위
-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6 조의 2 에 따라 자동화 평가의 결과, 자동화 평가의 주요 기준, 자동화 평가의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 등에 대해 설명하여 줄 것을 은행에 요구(서면, 전자우편, 인터넷 홈페이지,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설명 요구서 또는 재산출 요청서 제출)할 수 있습니다.
- 은행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, 기초정보가 정정·삭제되었더라도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한 경우, 재평가결과는 기존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.
- 자동화평가가 아닌 방식으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경우
-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- 해당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
- 금융소비자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-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 회 이상 반복적으로 대응권을 행사하는 경우



4. 대출금리 산정방식 및 결정요인

■ 대출금리 산정방식은 크게 고정금리 방식, 변동금리 방식으로 구분되며, 고객님이 신청하신 상품은 [

]방식의 상품입니다.



■ 대출금리 결정(변동)요인

- 대출금리는 은행의 자금조달금리에 각종 원가요소와 마진(목표마진율)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.
- 대출금리는 변동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표시됩니다.





○ 대출 기준금리는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주기 도래시 실제 변하는 금리로, 기준금리별 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.

<u> </u>	눌 기군금디는 변동금디내물의 금디변동부기 노대시 실제 변하는 금디도, 기군금디월 특성은 아대와 슅급니다.					
구분	금융채	COFIX (신규취급 기준)	COFIX (신잔액 기준)			
내용	 은행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금리 만기 6 개월, 1 년, 5 년 등 대출만기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(매일 공표) 	■ COFIX(Cost of fund index, 코픽스)는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'조달비용지수'를 의미하며, 주요 8 개 은행의 예적금·금융채 등 조달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 ■ 매월 15 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고시				
특징	 시장금리이므로, 금리 상승기, 금리 하락기 변동 상황을 그대로 반영 일반적으로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은 경향 (시장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단기물 금리가 높은 경우도 발생) 	■ (기준) 신규취급액 ■ (기간) 공시 전월 1 개월 ■ (항목) 정기예금, 정기적금, 금융채, CD, RP 등 8 개	 (기준) 잔액 (기간) 공시 전월말 (항목) COFIX(신규)항목 + 요구불예금 등 결제성 자금, 기타차입금 등 포함 			
변동 예시	급리 1년물 ■ 5년물	급리	● 신규 ■ 신잔액			

- 가산금리는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대출 기준금리 외에 나머지 부분으로 아래 등과 같이 구성됩니다.
 - 조달리스크프리미엄 : 자금조달금리와 대출 기준금리 간의 차이 등
 - 유동성프리미엄 : 자금재조달의 불확실성에 따른 유동성리스크 관리비용 등
 - 예상손실율 : 고객의 신용등급, 담보 종류 등에 따른 평균 예상 손실비용 등
 - 위험자본비용율 :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해야 하는 자본의 기회비용 등
 - 업무원가율 : 대출취급에 따른 은행의 인건비·전산처리비용 등
 - 법적비용 : 보증기관 출연료와 교육세 등 각종 세금 및 준조세성 부담금
 - 목표마진율 : 은행이 설정하는 수익률
 - 가감조정금리 : 상품자동감면금리, 시스템감면금리 등
- 결정된 대출금리는 개별약정에 의해 별도로 정한 항목(변동금리대출의 기준금리, 우대금리 등) 이외에는 대출만기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- 신용등급 변동, 기한연장, 채무자변경 등 대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시점의 자금조달금리, 원가요소, 마진 및 가감조정금리에 따라 대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

5. 상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

■ 상환방법별 특징



■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·이자율·시기

-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상환방법은 [] 입니다.
- 동일한 금리·한도로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상환방법에 따라 만기까지 부담해야하는 총 원리금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하단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상환방법별 원리금 부담액 예시 (1 억원을 대출기간 5 년으로 하여 연 5%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)
 - ※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하게 계산한 예시이며, 실제 납부 원리금은 금리적용방식, 상환주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원리금 균등상환을 선택한 경우

상환기간	원금	이자	상환금액	대출잔액
1 년	1,810 만원	500 만원	2,310 만원	8,190 만원
2 년	1,900 만원	410 만원	2,310 만원	6,290 만원
3 년	1,995 만원	315 만원	2,310 만원	4,295 만원
4 년	2,095 만원	215 만원	2,310 만원	2,200 만원
5 년	2,200 만원	110 만원	2,310 만원	0 원
합계	1 억원	1,550 만원	11,550 만원	-



○ 원금 균등상환을 선택한 경우

상환기간	원금	이자	상환금액	대출잔액
1 년	2,000 만원	500 만원	2,500 만원	8,000 만원
2 년	2,000 만원	400 만원	2,400 만원	6,000 만원
3 년	2,000 만원	300 만원	2,300 만원	4,000 만원
4 년	2,000 만원	200 만원	2,200 만원	2,000 만원
5 년	2,000 만원	100 만원	2,100 만원	0 원
합계	1 억원	1,500 만원	11,500 만원	-

○ 만기 일시상환을 선택한 경우

상환기간	원금	이자	상환금액	대출잔액
1 년	0 원	500 만원	500 만원	1 억원
2 년	0 원	500 만원	500 만원	1 억원
3 년	0 원	500 만원	500 만원	1 억원
4 년	0 원	500 만원	500 만원	1 억원
5 년	1 억원	500 만원	10,500 만원	0 원
합계	1 억원	2,500 만원	12,500 만원	-

■ 상환방법 등에 따른 유의사항

- 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상환부담 : 거치기간이 종료되면 거치기간 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며, 분할상환이 개시되어 이자와 함께 원금도 갚아나가야 하므로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-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상환부담 : 만기일시상환 상품의 경우 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며, 기한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■ 이자 납입방법

- □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매월 이자를 납입하며, 대출계약 시 지정한 자동이체계좌에 납입일까지 이자를 입금하거나, 모바일앱을 통해 휴일에 상관없이 직접 상환거래 가능
- □ 마이너스 통장 대출 : 이자납입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,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납입하며, 대출한도가 설정된 입출금계좌에 납입일까지 이자를 입금
- 마이너스 통장 대출의 경우 '매일의 잔액'에 대하여 하루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 납입일에 대출금액에 합산
- ☞ '매일의 잔액'의 의미 = 마감잔액 + (하루 중 최고잔액 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 중 큰 금액)
- ☞ 개시잔액과 마감잔액은 매일의 잔액을 산정하기 위해 은행이 정한 시작 및 마감 시간의 대출잔액을 말함
- 이자 납입방법이 자동이체인 경우, 이자 납입일(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대출원리금 등의 납입일)에 잔고부족 등의 이체불가 사유로 납입금액 전부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입지정일 이후 은행이 정하는 출금일에 미납금액(지연배상금 포함)을 출금하여 대출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.



6.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

가. 연체이자(지연배상금) 부담

- 연체금리는 [대출금리 + 연체가산금리]로 적용합니다.
 - 연체가산금리 : **연 3**%
- 연체금리는 최고 연 15%로 합니다. 단, 대출금리가 연 15%보다 높을 때에는 대출금리에 연 2%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.
- 상품에 따라 연체금리가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연체이자(지연배상금)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
- ① 「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」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
 -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 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, 1 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므로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더하여 내셔야 합니다.
- ② 「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」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
 -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더하여 내셔야 합니다.
- ③ 「분할상환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」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
 - 분할상환금을 상환하여야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에 대한 연체이자를, 2 회 이상 (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 회)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더하여 내셔야 합니다.
- ④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에서 정한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될 때
 - ※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예시 (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 중 발췌)
 - 1.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
 - 2.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(제 1 호의 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은 제외)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도달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
 - 3.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있는 때
 - 4.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
 - 5.회생·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이 있는 때
 - 6.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
 -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- ⑤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
 -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 개월간 지체한 때 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제 7 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, 그 다음날부터 일중 최고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- 이자납입 연체로 인하여 연체금리가 적용되었을 경우, 일부연체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도 **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기 전까지 대출 잔액에 연체금리가 적용**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단,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 계좌의 대출원금(현재 대출 계약의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)이 5 천만원 미만인 대출의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,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 등은 연체이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,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한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더하여 냅니다.

나. 그 밖의 불이익

- 대출 원리금을 5 영업일 이상 연체한 경우 단기연체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어 금융거래 제한(신용카드 정지 등) 받을 수 있고, 개인신용평점 하락 및 이에 따른 금리상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기연체정보 등록 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여 단기연체정보 보가 해제되어도 개인신용평점이 일정기간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대출 원리금을 3 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그 3 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, 그 때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「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」에 따른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.
- ○「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」개정으로 연체정보 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, 이럴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라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.
- 장기연체정보가 등록된 후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기록이 최대 1 년동안 남아 있을 수 있어, 동 기록으로 인해 금융상의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7. 계약기간 및 연장사항

- 계약기간이 너무 짧을 경우, 대출금 상환을 위한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, 너무 길면 불필요한 이자비용 및 중도상환 시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.
-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
- 약정한 대출기한이 도래하면 만기일까지 전액상환하기로 합니다. 다만, 만기일시상환방식(마이너스 통장대출 포함)의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, 만기 도래 전 모바일앱을 통한 기한연장 신청이 필요합니다. 연장 신청 시, 상품에 따라 재직 및 연소득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**신용점수 하락, 연체 등이 발생**하는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금의 **일부를 상환(감액)**해야 하거나 **연장이 거절**될 수 있습니다. 연장이 거절되는 경우, 만기일까지 대출 잔액 및 미지급 이자 전부를 상환하셔야 합니다.
-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출(공무원대출 등 기타 협약대출 등)의 경우 **자격이 유지되는 경우**에만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
- 계약기간 연장 신청(약정) 시, 대출 기준금리(변동주기 포함) 변경이 불가합니다.

8. 대출계약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

- 개인(신용)정보 조회는 고객님의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- 대출계약의 체결만으로도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, 대출계약이 변제 혹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-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·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적인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.
- **개인신용평점 하락 시** 대출 및 신용카드 상품 등의 이용에 **불이익**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9. 기타 유의사항

-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[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(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에서 정한 사유)]
- 채무자인 고객소유의 예금, 담보부동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으로부터의 압류명령 등이 있는 때 등
- 대출기한이 도래되었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을 하나라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 등
 - ☞ 은행의 서면청구에 의해 모든 대출금(또는 해당 대출금)을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곧 상환하셔야 합니다.
- 기한의 이익이란?
-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며, 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.
-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?
- 모든 대출금(또는 해당 대출금)을 즉시 상환
- 연체이자 부담
-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등

■ 대출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

- 대출계약의 해지 시 중도상환해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 년 이내의 기간에만 부여됩니다.
- 대출신청 이후 고객에 의한 대출취소 또는 대출심사 거절 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.
- 체크카드 연계 계좌 마이너스 통장대출 약정 관련 안내사항
- '체크카드'는 '신용카드'와 달리 신용공여기간이 부여되지 않고 결제 시 결제계좌에서 이용금액이 바로 출금처리 됩니다.
-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체크카드 결제 계좌로 이용할 경우 예금잔액이 부족하게 되면 마이너스 통장대출로 결제금액이 지급되고 대출사용에 따른 이자가 발생됩니다.

■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신청

-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대상 상품 여부 : □ 대상 □ 비대상
-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대출에 대하여 원금부터 상환을 원하시는 경우, 유선 상담을 통해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 - ☞ (변경전) 비용, 이자, 원금 순서로 상환 → (변경후) 비용, 원금, 이자 순서로 상환
 - ☞ 서울보증보험 신용보험증권을 담보로 한 신용 또는 담보대출 등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의 경우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

☞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이후 비용, 이자, 원금 순서로 재변경을 원하시는 경우, 유선상담을 통해 변경 신청이 필요하며, 접수 후 은행이 정한 일정 기간 내에 미납된 이자 및 원금에 대해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.

■ 채무조정요청권

- 채무조정요청권 대상 상품 여부 : □ 대상 □ 비대상
- 채무자는 실직, 폐업, 질병으로 인해 불가피한 재무적 곤란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곤란한 경우, 은행이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은행은 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채무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, 상환능력 심사결과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으며, 심사결과에 대해 채무자에게 곧 통보합니다
- 은행은 고객님의 정확한 상환능력을 추론하기 위하여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을 산출하여 심사에 활용할 수 있으며, 연소득 대비연간 원리금 상환비율이 높은 경우 심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■ 은행·채무자로부터의 상계

- 상계란 채무자(고객)와 은행이 서로에 대해 금전 채무(대출)와 채권(예금 등)을 가지는 경우, 일방적 의사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.
- 은행은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였거나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, 고객이 보유한 대출과 예금 등(예금 기타의 채권)을 만기도래 여부와 상관없이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.

■ 여러 개의 채무 시 안내사항

-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여러 개인 경우이면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객이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. (채무지정권)
- 다만,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- 또한, 은행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, 은행은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은행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.

■ 본인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와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, 금융소비자의

고객확인 :	•	(서명)

본 상품은 카카오뱅크 여신캠프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상품입니다.

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(1599-3333),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kakaobank.com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행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 (www.fcsc.kr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